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
----------	------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2일
발 의 자 : 이창섭 의원(1명)
찬 성 자 : 유찬중, 김기대, 전철수, 이숙자,
남창진, 김정태, 우창윤, 유동균,
김인제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일부 표기상 오류가 있는 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조성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표기상 오류를 수정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함

2. 주요골자

가. “시민”이 서울특별시민의 약어임을 표시하여 표기오류를 수정함
(안 제3조제3호)

나.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책무를 가짐(안 제4조제3항)

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안 제5조제4항)

라. “서업”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을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u>시민</u> 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생략)	제3조(기본방향) ----- -----. 1. 2. (현행과 같음) 3. ----- <u>서울특별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신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u>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u>서업</u> 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적용범위) ① ----- <u>사 업</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